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성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41
----------	-------

발의연월일 : 2023. 12. 15.

발 의 자 : 강성희 · 류호정 · 심상정
장혜영 · 용혜인 · 배진교
양정숙 · 윤미향 · 고민정
민병덕 · 윤영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관련비용에 대하여 손금 산입 여부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고 업무용 사용금액만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은 법인이 해당 차량의 업무용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이 운행기록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실제로 세무당국이 법인의 운행기록 작성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행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용 및 비업무용 사용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구분하

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업무용승용차의 관련비용은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세수 감소를 고려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를 시가 7천만원 미만의 차량으로 제한하여 손금산입 절차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비”로 한다.

- ② 내국법인이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천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시가 7천만원 미만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내국법인이 시가(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천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시가 7천만원 미만인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 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2. (생략)

④ ~ ⑥ (생략)

⑦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계산
및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다음 -----

1.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감가상각비-----